[별표 22] <신설 2014.12.8., 개정 2015.8.21., 개정 2017.4.01., 개정 2021. 5. 24.>

첨가, 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(제12조제2항 관련)

구 분		사 료 명	허 용 기 준
가. 비단백태질소화합물		배합, 단미, 보조사료(비단백태질소화합물 제외)	혼합금지. 다만, 6개월령 이상 고기소용·젖소용 배합사료에 요소는 2%, 기타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은 1.5% 이내에서 각각 혼합이 가능함. ※ 6개월령 이상 고기소용·젖소용 배합사료 이외의 사료 내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의 함량이 0.09% 이내이면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봄
나. 염산불용물질 (토사 등)		배합, 단미, 보조사료	혼합금지. 다만, 양계용·양돈용·축우용 배합사료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첨가 가능함. ※ 염산불용물질의 함량이 다음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 (1) 골분, 골회, 가금부산물건조분, 서류, 수지박, 어즙흡착사료, 우모분, 육골분, 육분, 육즙흡착사료 : 3% 미만 (2) 어분 : 2% 미만 (3) 기타 배합사료,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: 1.5% 미만(다만, 광물성사료, 규산염제, 항응고제,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및 부형제(광물성과 규산염제, 항응고제에 한함)를 포함하는 사료는 제외한다)
다. 항산화제		배합사료 (프리믹스용 배합사료 제외)	150g 이하(유효성분량 기준)/배합사료 1톤 다만, 수산동물용은 300g이내(유효성분량 기준)/배합사료 1톤 ※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에톡시퀸 혼입금지. 다만, 함량이 0.002%미만이면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봄.
라. 항곰팡이제		배합사료 (프리믹스용 배합사료 제외)	3㎏ 이하(유효성분량 기준)/배합사료 1톤
마. 착색제	아스타키산틴	배합사료	100g 이하(유효성분량 기준)/배합사료 1톤 다만, 갑각류, 도미, 송어 및 연어용에만 허용기준 이내에서 사용 가능
	칸타산틴	배합사료	8g 이하(유효성분량 기준)/배합사료 1톤. 다만, 닭, 메추리, 오리, 칠면조 등에만 허용기준 이내에서 사용 가능. 또는 25g 이하(유효성분량 기준)/배합사료 1톤. 다만, 송어 및 연어용에만 허용기준 이내에서 사용 가능
	아포카로텐산에스테르	배합사료	80g 이하(유효성분량 기준)/배합사료 1톤. 다만, 닭, 메추리, 오리, 칠면조 등에만 허용기준 이내에서 사용 가능
바. 개미산		배합사료	0.5% 이하
사. 포르말린(포름알데히드)		배합, 단미, 보조사료	혼합금지. 다만, 「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」 및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근거하여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.
아. 식물스테롤[식물스테롤에스테르 포함]		**배합, 단미**	**0.65% 이하**

* 이 고시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AC :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)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,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.